

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9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. 개정이유

-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II. 주요골자

-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대상자 중 구소속공무원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,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변경
(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)

III. 검토의견

- 2006. 12. 28.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등에 대한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는 바, 종전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구소속공무원, 구의회의원 및 구의회소속 공무원 중 구의회의원과 구의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·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, 2007. 6. 29. 시행일을 앞두고 관련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.

IV. 관계법령

○ 공직자윤리법(2006.12.28, 법률 제8098호)

第9條 (公職者倫理委員會) ①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査·決定하기 위하여 國會·大法院·憲法裁判所·中央選舉管理委員會·政府·地方自治團體 및 特別市·廣域市·道教育廳에 각각 公職者倫理委員會를 둔다.

1. 財産登錄事項의 審査와 그 結果의 처리
2. 第8條第1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
3. 第1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承認
4.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의 權限으로 정한 사항

②각 公職者倫理委員會의 管轄은 다음과 같다.<改正2006.12.28>

5. 特別市·廣域市·道公職者倫理委員會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,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, 특별시·광역시·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, 시·군·구의회의원, 시·군·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
6. 市·郡·區公職者倫理委員會는 시·군·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, 관할공직유관 단체의 임·직원, 시·군·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8.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號 내지 第7號외의 公職者와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

※ 개정전 (2006. 2. 21, 법률 제7849호)

第9條 (公職者倫理委員會) ②각 公職者倫理委員會의 管轄은 다음과 같다.

5. 特別市·廣域市·道公職者倫理委員會는 特別市·廣域市·道所屬公務員, 管轄公職有關團體의 任·職員, 特別市·廣域市·道議會議員 및 議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
6. 市·郡·區公職者倫理委員會는 市·郡·區所屬公務員, 管轄公職有關團體의 任·職員, 市·郡·區議會議員 및 議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